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8. 4. 17. 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(안 제1조)「사무관리규정」제41조 →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40조
- 특수공인의 등록에 대비한 조문 신설(안 제2조제4항)
-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정비(안 제3조)
- 폐기 공인의 보존 방법 등 정비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○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규정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이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총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O 주요내용은.

-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규정을 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에서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.
- 안 제2조제4항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34조에 따라 특수공인의 등록에 대비하여 특수공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3조. 제8조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36조 (등록)에 따라 공인의 등록, 비치 및 관리자를 정비하였으며, 특히 안 제3조제4항에서 는 공인관리자 및 관리기관을 구체화하고, 관리자 직위를 주무주사에서 동장으로 상향 규정하였음.
- 안 제10조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37조(재등록 및 폐기)에 따라 폐기 공인의 보존방법 등을 정비하였음.
- 안 제12조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, 재 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32 조(공고의 내용)을 반영하여 공고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게 정비하였음.
-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사정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합하게 전부 개정된 것으로 사료 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저촉 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55 호 제출연월일: 2018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근거 규정 명칭 변경사항 반영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, 현재 사정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나. 특수공인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2조)
- 다.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정비(안 제3조)
- 라. 폐기 공인의 보존 방법 등 정비(안 제10조)
- 마.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(전체 조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「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제40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부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3.8. ~ 3.19. / 11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, 비치,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(이 하 "행정기관"이라 한다)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.
 -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의결기관, 자문기관,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,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.
 - 2.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.
 - 3.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.
 -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, 이를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,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, 민원업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.
- **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공인은 민원여권과(이하 "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, 그 밖에 기관의

-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.
-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, 무인민원발급기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, 무인민원발급기용일 경우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내부위임 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,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지원과장이 관리하고, 동주 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리한다.
- 제4조(규격)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.
- 제5조(인영의 내용)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"인" 또는 "의인"자를,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"인" 또는 "의인"자를 붙인다.
- **제6조(공인의 재료)**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7조(찍는 위치)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. 다만,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
- **제8조(공인의 등록)**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등록기관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가 관리한다.

-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,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-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 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)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의 폐기내역을 기재하고, 그 공인을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,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**제11조(공인대장)** ①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, 개각 또는 폐기할 때 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 -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,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
- **제12조(공고)**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페기 사유
 - 2.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
 - 3.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
 - 4. 공고기관의 장
- **제13조(인영의 보존)** 제3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인영의 인쇄사용)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(이하 "처리과의 장"이라 한다)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공인의 사고보고)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, 허위,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공인의 관리)**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,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.
- **제17조(사전날인 등)**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

공인의 규격(제4조 관련)

(단위 : cm)

	구 분	한변의 길이
	·구청장	2.4
직인	·동장 ·사업소장 - 4급,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 - 6급 공무원인 사업소	2.1 2.1 1.8
청인	합의제기관, 자문기관 등	3.6

〈별지 제1호서식〉

기 관 명

(전화번호)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발신 (인)

참 조

제 목 공인등록(재등록) 신청 공인폐기신고

고	인 명					
종	류		청인	직인	특수공인	
등록	-(재등록, 폐기)					
사	Ϋ́ Ti					
폐 기 대 산	폐기예정일 (분실일)		년	월	일	
상 공 인	폐기방법	소각	이관	기타()	
처 리	폐 기 자	소속	직급	성명		
비	71					

210mm×297mm 신문용지 54g/m²

〈별지 제2호서식〉

공 인 대 장

공인]명												
종	류	청인] 직인	특	수공	인		관리	부서				
				등	록	일		Ļ	4	월	일		
		(인	영)	새	긴	날		Ļ	4	월	일		
비o 哔 · ·				새	긴사	람	주소 성명 생년 ⁻	:	:				
재 등				최초	· ·	용일		Ļ	<u> </u>	월	일		
재 등 록 공				재		료							
				능	록사	유							
인				구;	보 공	고		(제		년 호)	월	일	
				비		고							
					록			Ļ	크	월	일		
폐		(인	영)	폐 (분	기 실	일 일)		Ļ	<u>च</u>	월	일		
241				폐	기사	유			마멸,	분실,	기타()	
7]				폐	기방	법			소각,	이관,	기타()	
공				폐	기	자	소속 직급 성명	:					
인				구.	보 공	'고		누 (제	<u> </u>	월 호)	일		
				비		고							
*비고	*비고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.												

210mm×297mm 인쇄용지(특급)70g/m² 210mm×297mm 한지 〈별지 제3호서식〉

전자이미지 공인대장

공 인 명			-				
종 류	청인 직인	(특수	공인)				
	전자이미지 공인] 인영		재등록일): 사 용 일 :		월 일 일	
Πļo		등. (재등 사	-록)				
록	전자이미지	관리-	부서				
재	공인 등록 당시의	구보	공고	Į.	크 월	일(제	호)
등 록 공 인	인영	비	고				
		등 록	- 일		년 ફ	일 일	
		폐기일			년 월	일 일	
폐		폐기	사유				
기 공 인	전자이미지 공인 인영	폐기	사	소속: 직급: 성명:			
		구보	공고	ı	년 월	일(제	호)
		비	卫				

비고: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며, 컴퓨터 파일로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 $210\text{mm}{\times}297\text{mm}$

인쇄용지(특급)70 g/m²

〈별지 제4호서식〉

인 영 대 장

날인연월일 공인명	년 2월1일 현재	년 2월1일 현재	년 2월1일 현재	년 2월1일 현재
	년	년	년	년
	신조 개각	신조 개각	신조 개각	신조 개각

210mm×297mm 인쇄용지(특급) 70g/m²

<u>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</u>

인쇄문서명		
공 인 명	인쇄공인 규 격	

일	자	인쇄량 (매)	사용량 (매)	사	<u> </u>	내	역	잔여량 (매)	확인 (서명)

210mm×297mm 인쇄용지(2급) 60g/m²

기 관 명

(전화번호)

문서	번호			
시행	일자			
수	신		발신	(인)
참	조			
제	목	공인사고 보고서		

1. 사고인영	
2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	
3. 사고내용	
4. 사고후의 처리 상황	
5. 기타	

210mm×297mm 신문용지 54g/m²